

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□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김광수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
□ 동 조례안은 환경보전 시책 협력에 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서울시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환경보전 시책에 공공·민간의 적극적인 실천을 유도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며, 「환경정책 기본법 시행령」 별표의 환경기준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,

□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,

모든 사회 주체들이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하도록 하고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가 규제조치를 할 수 있는 행위를 법령위반 행위 등으로 명시하며, 시 또는 자치구로부터

행정적, 기술적, 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협약 등을 체결한 주체들이 대기질 개선, 자원순환, 신·재생에너지 보급 및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 환경보전 시책에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 협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.

또한,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대기 항목 측정방법 삭제 및 PM-2.5 농도기준 추가 정비하는 것입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